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2009.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목 차

I. 제안 배경	1
II.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3
1. 법률적 근거	3
2.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	4
III. 「과거사연구재단」의 기능	5
1. 위상과 성격	5
2. 사업 내용	6
3. 설립 및 운영	7
IV. 결 론	10
■ 참고자료	
1. 국내외 재단설립 사례	12
2. 「과거사연구재단」의 위상과 성격에 따른 세 가지 방안...	16
3. 해외 과거사 관련 재단 및 기구	17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I. 제안 배경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은폐된 과거의 진실을 밝혀내,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 화해함으로써 미래 지향의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과거사정리는 진실규명, 피해자 구제와 명예회복, 그리고 화해, 기념사업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진실규명은 지난날 국가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와 희생의 실상을 밝히고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일이다. 곧, 은폐되고 왜곡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함으로써 사과와 용서를 이끌어 내 화해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감내해온 억울함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이들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은 가슴 속에 수십 년 응어리진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도 어디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오직 침묵만을 강요당해 왔다. 이는 국가의 책임이다. 국가는 이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진실규명이다.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과거사정리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건의 •

본법'에서도 화해 등 후속과제를 담당할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해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로 인한 사회·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고,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과 재단설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서는 유족, 정부, 국회, 시민사회단체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관련되는 제반 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재단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II.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1. 법률적 근거

기본법 제정 당시에 이미 진실화해위원회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과거사연구재단」 설치를 상정하고 있었다.

기본법 제40조는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재단의 사업으로는 ①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②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③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또 시행령 제14조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해 왔다. 재단설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학계와 법률전문가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자문을 받았고 유족단체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 결과를 정리하여 기본법에 근거해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한다.

● 기본법 ●

제40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 ①정부는 위령 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과거사 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 ②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과거사연구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과거사연구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된다.

● 시행령 ●

제14조(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지원 등)

①위원회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과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기간이 8개월여 정도 남은 시점에, 진실규명에 따른 화해와 기념사업 등 후속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또 그동안 위원회가 이룬 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대책과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첫째, 기본법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수행할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과거사정리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통해 과거사 극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대책을 수행함으로써 과거사 문제로 인해 누적되어온 사회·정치적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통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또 이는 장차 남북통일 이후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내적 통일’ 과제를, 동·서독 통일 후의 독일 사회처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하다.

셋째, 국가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를 계승하여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회복, 국민화해·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와 재단설립까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Ⅲ. 「과거사연구재단」의 기능

1. 위상과 성격

「과거사연구재단」은 기본법 제40조에 규정된 것처럼 정부의 기금 출연으로 재정적 지원을 받되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구이다.

국내외 여러 관련 재단들의 위상과 성격, 특징 등을 비교 검토해 보면 ① 공익성을 지향하는 특수법인, ② 공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법인 형태의 2가지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¹⁾

① ‘공익성을 지향하는 특수법인’으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 등이 있다. 이 경우 포괄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과 과거사정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② ‘공익성을 추구하는 민간법인’으로는 「5·18기념재단」, 「제주4·3평화재단」 등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민간인들의 지원과 교류를 통한 사회적 화해를 원활히 하고 장기적으로 과거사 극복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조직이 취약하고 실질적 권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과거사 문제를 전담할 ‘정부기구’를 설립하여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해결책을 추진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우에 정부 부처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기구로 설치될 경우

1) 방안별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 특징 분석 등은 <참고자료 2> 참조

는 사업내용의 가변적인 성격과 기구 운영의 자율성 측면에서 여러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학계 등 전문가의 연구와 기본법상의 기능을 토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과거사연구재단」은 국가의 책임 이행과 과거사정리의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공익성을 지향하는 특수법인’ 형태가 적절한 것으로 모아졌다.

2. 사업 내용

기본법 제40조 제3항은 「과거사연구재단」에서 담당할 사업으로 1) 위령 사업 및 사료관의 운영·관리, 2) 추가 진상조사사업의 지원, 3) 진상규명과 관련한 문화, 학술 활동의 지원, 4)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법에 명시된 사업 내용을 전제로 하여 재단의 사업을 3가지 분야로 나누어 검토한다.

가. 화해와 기념사업

화해는 진실규명과 함께 기본법의 목적인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핵심 가치이므로 「과거사연구재단」의 중심과제이다.

국가 차원의 화해방안, 가해자와 희생자 간의 화해, 화해 사례 축적 및 전파 등에 관한 사업과 연구를 추진한다.

기념관, 유해 봉안소 등을 포함한 전국단위 혹은 각 지역의 위령시설을 건립하여 추모 및 기념사업을 수행한다.

나. 기록·연구사업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활동 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사료관(과거사 기록관)을 설치하여 이를 널리 활용할 수 있

게 하고, 관련연구와 교육사업을 지원한다.

과거사정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연구서 및 학술지를 발행·보급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연구결과에 대한 국제적인 교류와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재발방지와 평화·인권의 신장, 관계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시행한다.

다. 조사·발굴(지원)사업

피해자 현황조사, 기초사실 조사, 유해 발굴, 유해의 봉안과 관리, 발굴된 유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가족 확인사업 등을 수행한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취급된 사건 및 미신청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보완연구, 진실규명 조사와는 다른 차원의 생애사적 구술조사,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와 유가족의 의식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그 밖에 희생자 유가족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 심리적·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체계적 연구 등 치유 업무도 담당한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미결된 사건이나 미신청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사업을 지원한다.

3. 설립 및 운영

가. 추진 주체

기본법 제40조에 정부가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해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시행령 제14조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재단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단의 성격이나 설립 시기를 감안, 재단의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범국민

적 추진 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예컨대 정부, 피해자 및 유가족 단체,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 집단 등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광범위하게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나. 설립 절차

설립 시기는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종료와 동시에 재단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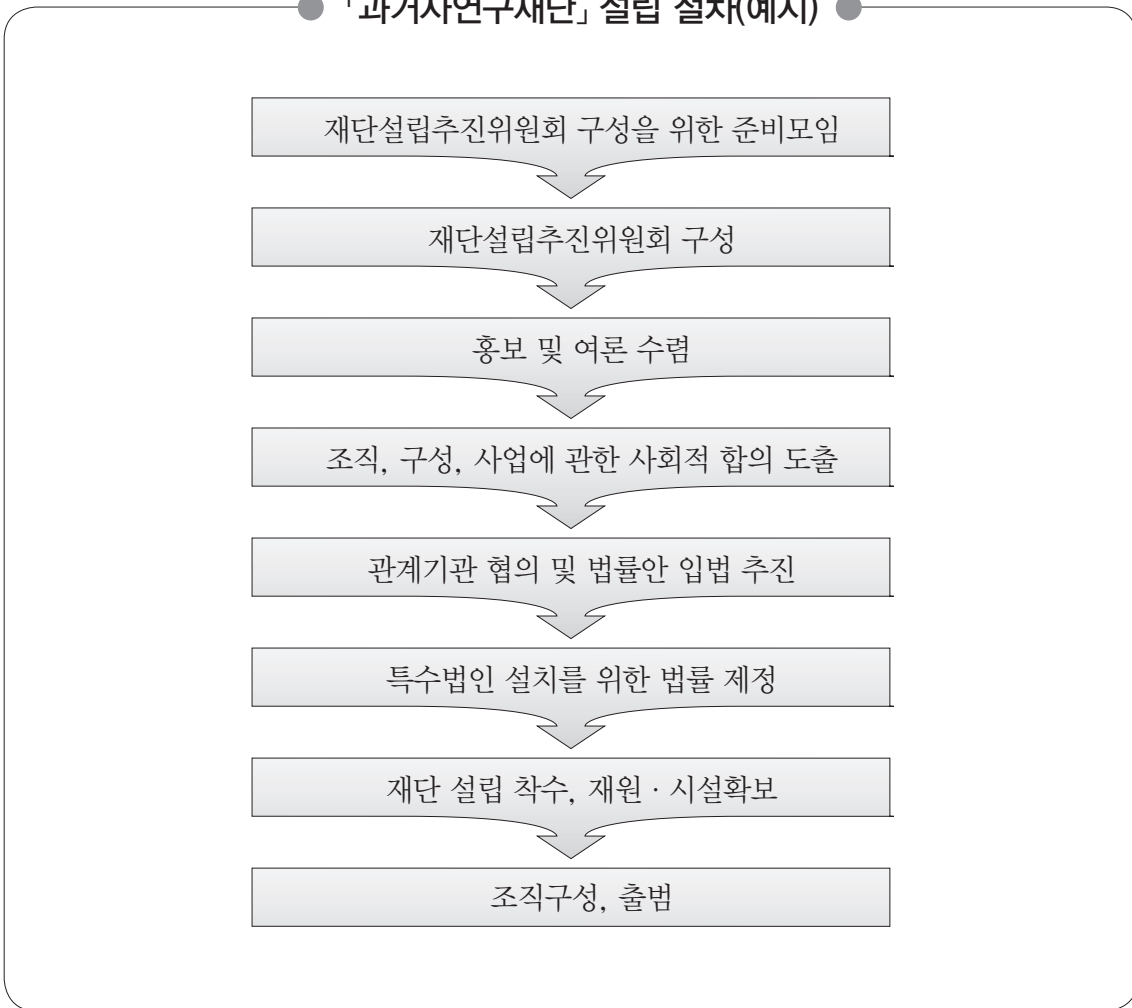
우선 진실과 화해라는 과거사정리 취지에 공감하는 유족, 학계, 정부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재단설립추진위원회’는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관한 홍보사업을 전개하고 전문가 토론회 및 여론 수렴을 통해 재단의 조직, 구성, 사업내용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

특수법인으로 설립될 경우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야 하므로 입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 재단의 정관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 인가 신청, 법인 설립, 조직 구성을 진행한다.

● 「과거사연구재단」 설립 절차(예시) ●



다. 조직 구성

재단의 기본 조직으로 이사회, 사무처, 기념관 등을 두도록 한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그 운영방안은 추진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많은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과거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상처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향한 의미있는 성과들을 낳고 있다.

이제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한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서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되어야 한다.

「과거사연구재단」은 수십 년 멧힌 고통의 해원, 화해와 상생, 분열 극복과 국민통합, 국가의 신뢰회복 등에 기여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를 일거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제기되는 사안에 따라 형식을 달리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과거사연구재단」은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과거사정리를 통해 이루어 온 업적들을 한데 모아 빛을 발하게 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과거사정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공들인 만큼 얻는 성과와 교훈은 클 것이다.

「과거사연구재단」은 우리사회의 내적 통합을 다지는데 값지게 활용되고 진정한 국민통합과 미래지향의 밝은 한국사회를 열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내외 재단설립 사례

가. 국내 사례와 시사점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 사례로는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주4·3평화재단」 등을 들 수 있다.

■ 5·18기념재단

- 설립 목적 :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신과 대동정신을 기념,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사업 내용 : 조사사업, 학술연구사업, 기록사업, 문화사업, 교육홍보사업, 민주화운동사업 등
- 설립 형태 : 5·18 관련 피해자들이 받은 보상금과 시민출연 기금으로 1994년 설립한 민간공익법인
- 주요 성과 : 5·18정신 계승으로 사회갈등 해소 및 국내외 인권·평화운동에 기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설립 목적 :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 사업 내용 : 민주화운동의 정신계승과 민주발전 지원 및 기여사업, 사료 수집·관리, 기념 추모사업, 국제 교류사업 등
- 설립 형태 : 공익성을 지향하는 특수법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업계획, 예산 승인 및 지도·감독 권한
- 주요 성과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등의 전개로 한국 민주주의의 정착·발전 기여

■ 제주4·3평화재단

- 설립 목적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이후의 후속조치 수행
- 사업 내용 :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기념사업, 추가 진상조사 등 수행
- 설립 형태 : 정부의 기금출연으로 2008년 11월 설립. 공익성을 띤 민관협력형 재단법인
- 주요 성과 :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화합의 계기 마련

이들 재단들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재정·조직의 안정성과 사업의 독립성 보장 등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들 재단과 마찬가지로 「과거사연구재단」이 설립될 경우, 진실과 화해라는 과거사정리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여 피해자의 상처 치유,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국외 사례와 시사점

해외 사례는 특별법에 의해 정부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형태로 칠레의 「국가배상화해재단」(Corporation Nacional de Reparacion y Reconciliacion : CNRR), 조례에 근거한 정부설립 재단법인 형태인 대만의 「2·28사건기념기금회」가 있으며, 민간재단으로 설립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만델라재단」(Nelson Mandela Foundation) 등이 있다.

독일의 「기억·책임·미래재단」(Stiftung “Erinnerung, Verantwortung und Zukunft”)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과 인접국가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보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성격이 타 국가의 사례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재단설립의 형태가 정부와 기업이 동시에 기금을 출연해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칠레 : 국가배상화해재단**

- 설립 목적 :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및 미규명 사건과 위원회 종료 이후 제기된 신규 사건 조사
- 사업 내용 : 피해자 확인, 사회적·법적 조력, 교육·문화, 법률연구, 문서정리 등
- 설립 형태 : 특별법에 의한 정부 설립 재단법인

■ **대만 : 2·28사건기념기금회**

- 설립 목적 : 1947년 2·28사건을 기념
- 사업 내용 :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보상, 2·28사건의 기념 활동 등
- 설립 형태 : 조례에 의한 정부 설립 재단법인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넬슨만델라재단**

- 설립 목적 : 과거사 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통해 화해와 통합 추구
- 사업 내용 : 사회적 차원의 화해·위령사업, 교육 등 인권신장을 위한 사업
- 설립 형태 : 민간재단

■ **독일 : 기억·책임·미래재단**

- 설립 목적 : 나치에 의한 유대인 및 인접국가의 강제노동자 피해 보상
- 사업 내용 : 강제노동자 보상, 각종 화해프로그램, 기억 프로그램,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인권문제 등 각종 사업을 전개

• 참고자료 •

- 설립 형태 :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관공동재단

해외의 과거사 청산과정을 보면,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보상, 화해 및 위령 사업이 이루어져 의미 있는 성과를 낳고 있는데 이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한시적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재단을 설립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기록·연구·교육 등 후속조치들을 추진하여 잘못된 과거사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사재단의 성격은 주로 특별법에 의한 공적인 법인형태가 많으며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되 활동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다.

2. 「과거사연구재단」의 위상과 성격에 따른 세 가지 방안

	〈제1안〉 공익성 지향하는 특수법인 설립	〈제2안〉 공익성 추구하는 민간법인 설립	〈제3안〉 독립성과 통합성 보장된 정부기구 설립
형태	•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 재단법인	• 국가기관
업무 영역	• 강제력 갖춘 조사기능 → 정부 부처 이첩 • 배·보상 관련 심의 기능 (ㄱ) 특수법인 내 부서 전담 (ㄴ) 전담 독립 기구 설립 (ㄷ) 정부 부처 이전	• 〈제1안〉과 동일	• 강제력 갖춘 조사 • 배·보상 관련 심의 • 연구·교육·치료 사업
사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기억·책임·미래재단(독일)	• 5·18기념재단 • 제주 4·3평화재단	• 정부 부처 내에 전담 부서 설치(아르헨티나, 칠레 사례)
장점	• 유족, 시민단체, 학계의 요구 수용 용이 • 포괄적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성 확보 가능	• 사업계획의 형식성과 사업추진의 단기성 극복 가능 • ‘밑으로부터의’ 동력과 사회적 화해를 통해 포괄적 의미의 과거사 극복 도모	•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전향적 조치 시행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적 통합 가능 • 과거사 극복의 역할모델 수립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가능
단점	•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라 재정 지원과 연계된 독립성, 자율성 침해 가능성	• 재정보화가 어려울 경우 사업의 지속성에 어려움 발생할 수 있음	• 과거사정리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정부의 의지가 주요한 관건임
재원 마련	• 정부기금출연	• 정부보조금(기금)+기금조성	• 국가예산

3. 해외 과거사 관련 재단 및 기구

국가 및 재단명		내용	형태	업무영역	독립성 보장 방안	조직(도)	인력	예산규모	재원마련 방안
스페인	〈희생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위원회〉	국가기관 (한시적 위원회)	피해자실태 조사			위원장: 제1부 총리, 부위원장: 총무부 차관, 그 외 정부 각처 고위 관리 11명으로 위원회 구성	각 상임위별로 필요한 인원 확보		국가예산
아르헨티나	법률사회 연구소	민간주도 (197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자문과 기록보관 • 정신건강관리 	피해자 가족 중심의 비정부 기구	소장, 부소장, 이사진 10명 (각계 전문가 무보수 참여)	사무총장, 재무 담당자 외 각종 분과	일반 예산: 미화 \$64만6천 (한화 약 8억 4천만 원) 특별 예산(2006년)	민간 재단 기금 (54%), 국내외 비정부기구와 개인들의 기부금(22%) 등	
	'열린 기억'	민간주도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의 연합 조직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구술과 문서 자료 보관 • 교육프로그램 운영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 기구	회장, 부회장, 총무, 회계, 감사	사무총장, 5개 분과 팀장 포함 25인		시 정부 예산 + 외국 정부와 재단의 후원	
	'기억의 공간' 연구소	민관협력형 공공재단. 시조례 961호에 의거(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의 날 캠페인 주관 • 인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 책임 주제 선정의 자율성 보장	이사장, 시정부 대표 1명, 피해자 가족 단체를 비롯한 12개 조직의 대표	사무총장 외 7개 분과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예산 + 민간 기부금	
	법무·안보·인권부 산하 인권 차관실 국가기억 자료보관소	국가기관, 법률 제1259호에 의거(2003)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증인과 기록 보존과 분석, 교육	국가기관	소장 (법무·안보·인권부 인권 담당 차관이 겸직) 사무처장	직원 약 9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안보·인권부 예산 • 국제협력기관과 외국 정부나 기관의 예산 외 보조금 	
페루	사회행동 (가톨릭) 주교위원회	가톨릭재단 (1965년 창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 인권침해 사례 기록, 보관과 복원 • 기념물 설치 	민간주도형					가톨릭 기관 예산, 국제 가톨릭 단체의 지원
	집단지역과 인권을 위한 정보 센터	〈국가인권옹호즈맨〉 산하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관련 통계 조사 • 문서와 음향 기록 보존 • 전사와 교육 프로그램 지원 	국가인권 옹호즈맨 위원장은 의회에서 선출, 5년 임기 독립성 보장	옹호즈맨 위원장, 정보센터 사무처장			국가인권옹호즈맨 예산	

• 참고자료 •

내 용		형 태	업무영역	독립성 보장 방안	조직(도)	인 력	예산규모	재원마련 방안
국가 및 재단명	국가배상 화해재단	national corporation, 공익 재단법인 관주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확인 사회적-법적 조력 교육 및 문화, 법률연구 아카이브와 문서 정리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함.	6인위원회			국가예산 및 여타 국제 및 국내 재원으로 총당
	내무부 인권 프로그램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속프로그램 상징적 배상 조치 (위령 사업) 	정부조직	사무총장 1인이 총괄함.	32명 (2002)	\$400,000(한화, 약 5억 2천만 원, 2000년) \$748,000(한화, 약 9억 7천만 원, 2001년) \$735,000(한화, 약 9억 5천만 원, 2002년) \$757,000(한화, 약 9억 8천만 원, 2003년)	국가예산
독 일	기억, 책임, 미래 재단	특수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노동자 보상(종료), 각종 화해프로그램 기억 프로그램 역사의식 고취 	의회에서 이사진 선출 규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명(화해조치를 위한 미래기금) 보상액 지불은 동유럽 각국 및 유대인 조직을 협조기관으로 이용함 	50억 유로(한화 약 9조 원, 현재는 출연기금 3억5천 7백만 유로=한화 약 6천 3백억 원) 매년 예산 7백만 유로(126억)	국가예산 및 경제계의 일회성 출연기금의 이자수입
	동독공산당 독재청산 재단	정부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독 과거사 정리 화해·기념사업 출판사업 	의회 원내교섭단체에서 1명씩 파견(4명) 및 전문가추천 정부 추천 4명, 베를린 시 추천 1인	이사장 상임위원 13명	24명(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함)	2007년 예산 490만 유로(약 88억 원)	국가예산
	슈타지 문서기관	국가기관	동독 국가안전부 역사, 평가, 기록물 공개	위원장을 정부 추천으로 의회가 선출	이사회 자문회	본부 및 각 지부 총 2천여 명	약 1억 유로 (약 1800억 원, 약 85퍼센트가 인건비)	국가예산
대 만	재단법인 2·28사건 기념기금회		피해자에 대한 조사 및 보상		이사회, 이사장, 사무총장, 감사3처	전체 인원 18명으로 시작해 후에 13명으로 감원		국가예산 및 후원기금, 기금 이자, 운용수익 등